

2018년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 안내

1 사업 목적

-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특허바우처 사업」을 통해 필요한 IP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여, 강한 특허로 무장한 스타트업 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또는 도전적인 과제*를 추구하는 기술·IP 기반 스타트업**
 - * 새로운 제품/서비스/공정 개발 또는 기존의 제품/서비스/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
 - ** 국내에 설립된 비상장 회사(등록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로 예비창업자는 제외
- (사업 규모) 총 예산 10억원, 지원 스타트업 100여개
- (지원 방식) 스타트업에 바우처를 발급하면, 스타트업은 IP 서비스 메뉴와 Pool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 기관 중에서 자유롭게 필요한 서비스 및 기관을 선택·이용하고 바우처로 서비스 비용을 지불

< IP 서비스 메뉴 >

IP 서비스 항목	세부 내용	서비스 기관
국내/해외 IP 권리화 (변리 서비스)	특허(PCT 국제/국내단계 포함), 실용신안, 디자인(헤이그), 상표(마드리드) 출원	특허사무소(법인)
특허조사분석 및 컨설팅	선행기술조사, 특허맵, R&D 과제도출 등 IP 컨설팅(단, IP 분쟁예방 컨설팅은 특허청 '국제지식재산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에서 연계 지원)	특허사무소(법인), 민간전문업체
특허기술 가치평가	보증 및 담보대출, 투자유치 및 기술거래, 사업화(현물출자)를 위한 특허기술가치평가	발명진흥회등 '발명의 평가기관(15개)'
기술이전	IP 매각, 라이선스 in/out 중개	특허사무소(법인) 및 민간전문업체
기타 IP 서비스*	관리기관 사전 협의 및 승인시	

* (승인 기준) 보고서 등 서비스 결과물을 확인가능하고, 특허청 및 유관기관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닐 것(불가 예: IP 교육, 직무발명 보상제도 컨설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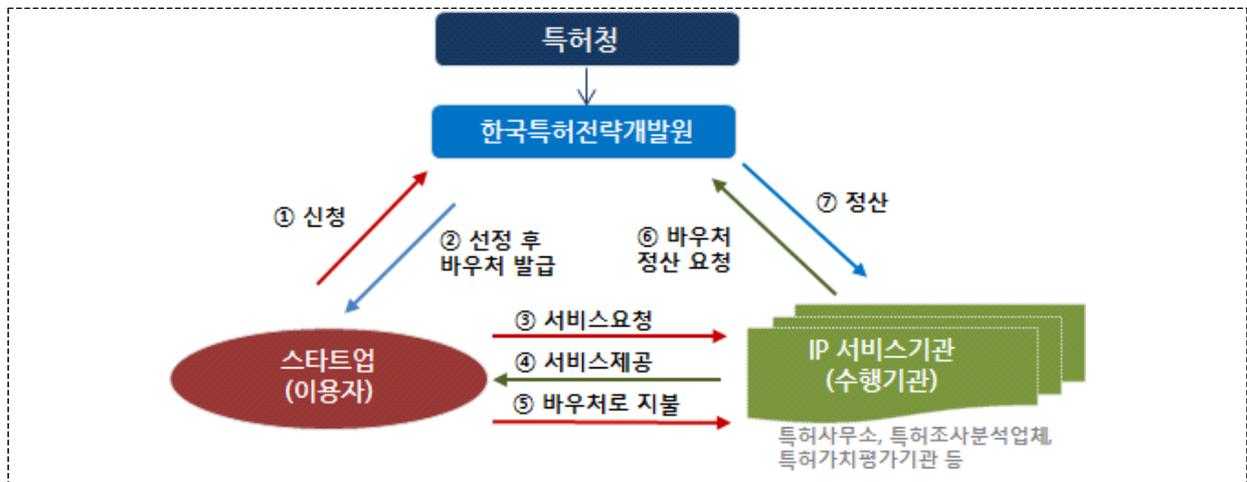
- (지원 유형) 소형 바우처(500만원 이내), 중형 바우처(2,000만원 이내) 금액의 70%를 지원(자기부담 현금 30%)하며 한도 내에서 재발급* 가능
* 최대 연 3회 발급 가능(중형 바우처의 경우 최대 6,000만원)

(VAT 포함 금액)

지원 유형 (자기부담)	소형 바우처(500만원 이내) (현금 30%)	중형 바우처(2,000만원 이내) (현금 30%)
신청 자격	창업 3년 미만이고 매출 10억 미만	창업 7년 미만이고 매출 100억 미만 및 IP(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등록 1건 이상

3 추진 체계

- (추진 체계)



- (특허청) 사업 총괄 관리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사업 기획·운영(사업 홍보, 스타트업 선정, 바우처 발급·정산, IP 서비스 기관 Pool 관리, IP 서비스 품질 평가, 사업성과 관리 등)
- (스타트업) 사업 신청, IP 서비스 요청(IP 서비스·기관 선택), 바우처 사용(지불), 사업 '진행 중' 및 '종료 후' 성과 자료 제출
- (IP 서비스 기관*) 사업 수행(IP 서비스 제공), IP 서비스 결과물 등 증빙자료 제출, 바우처 정산 요청

4 추진 일정

○ (추진 일정)

구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공고·신청·선정	1차				2차				3차		
바우처 발급		1차				2차				3차	
바우처 사용·정산		1차				2차			3차		
						1차					

○ (선정 횟수) 연 3회(1차(2~3월), 2차(6~7월), 3차*(10~11월))

* 1, 2차 바우처 비용 정산 후 남은 예산을 고려하여 진행

- (바우처 사용 기한) 발급 후~10월까지(1차, 2차) 및 12월까지(3차)

5 바우처의 발급, 사용, 정산 및 환급

○ (발급) 선정된 스타트업의 '자기부담분(현금 30%)' 선납 확인 후 바우처 금액을 포인트로 발급

- (재발급) 스타트업이 先발급 바우처 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바우처 사용 기한 내에 한도* 내에서 재발급** 가능

* 연 3회까지 발급 가능하며, 바우처 사용 계획 및 사업 예산을 고려하여 선발시 우선순위 및 횟수 부여

** 선정시와 동일(소형→소형, 중형→중형) 또는 하위 바우처(중형→소형(단, 업력과 매출조건 충족))로 재발급(즉, 소형→중형은 신청·선정 절차를 거쳐야 함)

○ (사용) 스타트업은 IP 서비스 메뉴와 Pool 등록 기관 중에서 필요한 서비스 및 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하고 바우처로 비용 지출

* 개별 서비스 비용이 정산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스타트업이 부담함

< IP 서비스별 정산 한도(안) >

(VAT 포함 금액)

IP 서비스 항목		세부	정산 한도	서비스 기관	
IP 권리화 (변리 서비스)	국내	특허	300만원 이하	특허사무소(법인)	
		실용신안	150만원 이하		
		디자인	50만원 이하		
		상표	40만원 이하		
	해외	PCT	국제단계		400만원 이하
			국내단계		1,500만원 이하
		특허·실용신안			1,500만원 이하
		디자인			300만원 이하
		상표	300만원 이하		
특허조사분석 및 컨설팅		선행기술조사		100만원 이하	특허사무소(법인), 민간전문업체, 및 발명진흥회 등 공공기관
		특허맵	자동	100만원 이하	
			Manual	1,500만원 이하	
		R&D 과제도출		1,500만원 이하	
IP 컨설팅		2,000만원 이하			
특허기술 가치평가		보증 및 담보대출		500만원 이하	발명진흥회, 기술보증기금 등 '발명의 평가기관(15개)'
		투자유치 및 기술거래		1,500만원 이하	
		사업화(현물출자)		2,000만원 이하	
기술이전(라이센싱) 증개			2,000만원 이하	특허사무소(법인) 및 전문업체	
기타 IP 서비스(사전 협의·승인시)			2,000만원 이하		

※ 스타트업이 메뉴에 없는 IP 서비스(이용 불가* 항목 제외)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 및 승인** 후 이용 가능

* (이용 불가) 기술·디자인·브랜드 개발 용역, 시제품 제작, 일반 법률·회계 서비스, 바우처 발급 전 이용 서비스, 국내 IP 출원·등록 수수료(관납료), 성공사례금 등

** (승인 기준) 보고서 등 서비스 결과물을 확인가능하고, 특허청 및 유관기관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닐 것(불가 예: IP 교육, 직무발명 보상제도 컨설팅 등)

○ (정산) 서비스 종료 후 IP 서비스기관에서 서비스 결과물·세금계산서 제출, 스타트업 및 관리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산(포인트→현금)

* (정산불가 한 경우) 스타트업이 '이용불가 항목'을 이용하였거나,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 및 승인없이 서비스 메뉴에 없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서비스 결과물이 서비스 사용 내역과 다른 경우 등

- (환급)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이 남을 경우, 바우처 잔액에 대해 스타트업의 자기부담 비율(30%)만큼 환급*

* (예시) ① (500만원 바우처) 150만원 선납 후 발급 → ② 특허 출원(150만원) 및 특허맵(300만원)에 사용(잔액 50만원) → 잔액 50만원의 30%인 15만원 환급

- (부정사용 방지) 부정사용 확인시 지원금액 환수 및 제재 조치

▶ 부정사용 유형(예시)

- ① 이용자와 수행기관(인력) 간 담합에 의한 허위비용 또는 고액 청구
- ② 수행기관이 바우처 자기부담금을 대납해주거나 대납을 약정하고 이용자 유치
- ③ 동일 서비스 또는 다른 지원 사업에서 지원받아 이용한 서비스 비용 중복 청구

- (부정사용 신고제) 스타트업 또는 IP 서비스기관 일방이 타방으로부터 부정사용을 제안받거나 실행한 경우, 관리기관 등에 신고*

* (인센티브) 스타트업은 익년 사업 선발시 우대, IP서비스기관은 서비스 품질 평가시 가점 부여

- (현장 점검) 바우처 결제 유형 분석, 허위청구로 의심되는 IP 서비스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 실시

- (벌칙) 부정사용 확인시 지원금액 전액 환수 및 제재* 조치

* 부정사용을 주도한 IP 서비스기관(인력) 또는 스타트업(대표)에 대한 바우처 금액 (또는 既지금액) 환수, 형사 고발 및 바우처 포함 특허청 사업 참여 영구 배제

6 [중요] 유의 사항

- (제재 조치) 스타트업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관리기관은 스타트업에게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특허 바우처 사용 불인정*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IP 서비스 항목 이외의 사항에 대해 특허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일반 법률회계 서비스, 바우처 발급 전 이용 서비스, IP 출원·등록 관납료, 성공사례금 등

○ (신청 및 지원 제외 사항)

구 분	신청 및 지원 제외 사항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 구비서류 미제출한 경우 -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정해진 기한 내 기업 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협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협약을 취소하고 지원 제외함
채무불이행 부실위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부도 또는 휴·폐업 상태인 경우